



##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

- 깨끗한 전파이용환경 조성**
  -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
  - 전파감시(Radio Spectrum Monitoring)
  - 불법 무선국 조사·단속
  - 전파교란 대응 및 전파혼신 처리
  - 국내위성 보호 및 해외위성 감시
- 신속·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**
  - 무선국 허가·검사
  - UHD TV 등 방송국(보조국) 허가·검사
  - 통신사업자 등록·신고
  -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
  - 찾아가는 전파민원 서비스
-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**
  - 불법 방송통신기자재·감청설비 조사
  - 이동전화 복제 조사
  - 불법스팸 전송자 조사
  - 전기통신설비 제공 감독
  -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
  - 방송편성비율 확인
  - 방송표준음량기준 준수 관리
- 전파 이용 촉진**
  - 주파수 이용 현황 조사
  - 전파 잡음 및 전파 혼신 조사
  - TV 수신환경 조사
  - 위성 전파환경 조사
  -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
- 국제 교류 협력**
  - 인접국간 전파관리 협력
  - 국제 표준화 활동
  - 전파관리 분야 국제교류
  -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
- 기술 교류 및 연구 지원**
  - 전파통신 기술 지원
  - 위성전파 측정 정보 제공

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

## 4차 산업혁명의 소중한 자원인 전파! 중앙전파관리소가 지켜가겠습니다.

중앙전파관리소는  
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,  
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.

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 
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 
안전한 방송통신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

인터넷 전자민원 : [emsip.go.kr](http://emsip.go.kr)  
민원상담 : 080-700-0074



### 전국 전파관리소

| 기관명      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중앙전파관리소  | (05830)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34         | 02-3400-2000 |
| 위성전파감시센터 | (17413)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안로 100     | 031-644-5900 |
| 서울전파관리소  | (08249)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-43   | 02-2680-1700 |
| 부산전파관리소  | (46705)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-17  | 051-974-5100 |
| 광주전파관리소  | (58214)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-24   | 061-330-6800 |
| 강릉전파관리소  | (25428)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-31   | 033-660-2980 |
| 대전전파관리소  | (35283) 대전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     | 042-520-4100 |
| 대구전파관리소  | (42043) 대구 수성구 동원로 90           | 053-749-2800 |
| 전주전파관리소  | (55316)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    | 063-260-0070 |
| 제주전파관리소  | (63037) 제주도 애월읍 도치들길 395        | 064-740-2800 |
| 청주전파관리소  | (28567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| 043-261-5811 |
| 울산전파관리소  | (45013)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-6   | 052-231-8821 |

[crms.go.kr](http://crms.go.kr)

대한민국 전파·방송통신의 중심  
중앙전파관리소

## 방송통신기자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합시다!



 **중앙전파관리소**  
Central Radio Management Service





## 방송통신기자재란?

-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·기기·부품 등을 말하며, 유선, 무선 및 정보기기 등이 해당됩니다.  
※ '방송통신기기' 또는 '정보통신기기' 라고도 함
- 방송통신기자재는 정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
##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란?

-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-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·제조·수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적합성평가를 받고, 제품에 인증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.

##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?

- 전파의 혼·간섭을 줄 수 있는 휴대폰, 무선랜, 무선조정기 등 무선기기
- 방송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기, 모뎀, 팩시밀리, 셋톱박스 등 유선기기
- 컴퓨터, 프린터, 모니터, 디지털카메라, USB, MP3, 차량용 블랙박스 등 정보기기
- 텔레비전수상기, 전기청소기, 전기밥솥, 조명기구 등 전기용품

##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확인하는 방법은?

- 제품에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  
※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에는 제품 내용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
- 인증마크



##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?

- 불량 제품과 달리 안전합니다.
- 화재,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파 영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.
- 주변기기에 간섭 및 오작동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.

##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발견하면?

- 중앙전파관리소 또는 전국 전파관리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중앙전파관리소

- 전화(무료) 080-700-0074
- 인 터 넷 www.crms.go.kr, www.emsip.go.kr

※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·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면 전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

### ■ 위반자에 대한 벌칙

| 위 반 내 용   | 처 벌 내 용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·수입한 자  |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•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진열(인터넷 게시 포함)·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·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       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• 복제 또는 개조·변조한 기자재를 판매·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진열(인터넷 게시 포함)·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·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|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       |

